

[별표 5]

징계양정기준(음주운전 관련)

음주운전 유형			처리기준
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	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 미만인 경우		정직 - 감봉
	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 이상 0.2퍼센트 미만인 경우		정직
	혈중알코올농도가 0.2퍼센트 이상인 경우		해고 - 정직
	음주측정 불응의 경우		해고 - 정직
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			해고 - 정직
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			해고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		정직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		해고 - 정직
음주운전으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		해고 - 정직
	사망사고의 경우		해고
	사고 후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	해고 - 정직
		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	해고
운전업무 관련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	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		해고
	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		해고 - 정직